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032-440-1722)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560-476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5. 11. 3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376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수탁 처리업시설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376일원	2,826	증)1,501	4,327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17호 (2015. 5.26.)	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수질오염 방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적 증가 - 위치 : 석남동 223-376번지 일원 - 면 적 : 2,826m²→4,327m² 증)1,501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오염방지시설 고도화(노후시설 정비, 현대화)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 시설 재배치 등 지속 가능한 관리·운영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확장

4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.)

○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